



캘리포니아 보호 및 옹호 시스템

무료 전화 (800) 776-5746

소비자가 3 세 이상인 경우, 지역 센터로부터 정보와 서비스를 모국어로 받을 권리

2016 년 4 월, 자료. #F101.03

이 자료는 소비자가 3 세 이상인 경우, 지역센터로부터 정보와 서비스, 개별 프로그램 계획 (IPPs, Individual Program Plans) 을 모국어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하버 지역센터 (HRC, Harbor Regional Center) 는 3 세 이상의 소비자에 대하여 “개별 프로그램 계획”이나 “IPP” 대신에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 또는 “IFSP”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자료는 3 세 이상의 지역센터 소비자 또는 신청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영아 또는 유아 (0-3 세)가 조기 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지역센터로부터 귀하의 모국어로 정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Your Baby’s and Toddler’s Rights [0-3 years] to Receive Information and Services in Your Native Language from the Regional Center under the Early Start Program)”

웹사이트: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F10001.pdf>.

상원법안 (SB, Senate Bill) 555 (Correa) 와 SB 82 (예산 및 재무 검토 위원회 2015 [Committee on Budget and Fiscal Review 2015])에는 렌터만

법 (Lanterman Act) 에 의거하여 지역센터는 귀하의 모국어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SB 555: http://www.leginfo.ca.gov/pub/13-14/bill/sen/sb_0551-0600/sb_555_bill_20131009_chaptered.pdf

SB 82: http://www.leginfo.ca.gov/pub/15-16/bill/sen/sb_0051-0100/sb_82_bill_20150624_chaptered.pdf

지역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 중에는 영어를 하지 못하거나, 영어로 말하고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나 귀하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센터에서 받기 위해 영어를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법률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거나 영어 사용에 제한이 있는 소비자나 그의 가족이 지역센터의 서비스와 지원에 관하여 동등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렌터만 법은 “모국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렌터만 법에 의하면 “모국어”란 귀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언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의 부모, 법적 보호자, 관리인, 또는 법적으로 승인된 대리인이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영어로 말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스페인어를 말한다면, 귀하의 모국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제도 법령 (California Welfare and Institution Code) 제 4512(m)조.

2. 만약 본인이 종종 청각 장애인이거나 청각 장애가 있거나, 종종 시간 장애인이거나 시각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센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가 종종 청각 장애인이거나 청각 장애가 있거나, 종종 시각 장애인이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데 지역 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센터는 차선의 의사소통 서비스를 통해 귀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지 및 제도법령 제 4642(b)조, 제 4643(d)조, 제 4646(h)조. 이러한 서비스에는 필요한 경우, 합당한 부가적 보조기기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귀하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를 결정 할 때, 지역센터는 귀하가 요청한 부가적 보조기기나 서비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 법령 (California Government Code) 제 11135(b)조, 42 미국법전 (U.S.C., United States Code) 제 12132 조, 28 미국 연방 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 제 35.160(b)조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지역센터는 공공기관이므로, 청각 및 시각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미국장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의 타이틀 III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2 U.S.C. 제 12192 조. 청각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ADA 타이틀 III 에 의거하면, 필요한 부가적 보조기기나 서비스에는 수화 통역자, 점자, 큰 글자 인쇄, 음성 녹음 등이 포함됩니다. 28 C.F.R. 제 36.303 조.

지역센터 (regional center) 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지역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수정하게 하거나, 지역센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가 ADA 를 위반한다고 생각되면, 귀하는 법무부 (DOJ, Department of Justice) 에 불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DA 에 관한 불만을 신고하는 방법을 보시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ada.gov/filing_complaint.htm.

3. 본인이(또는 자녀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이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지역센터에서 초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귀하가 도움을 청한 날로부터 15 업무일 이내에 초기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642 조.

4. 초기 검진은 본인의 모국어로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센터는 귀하와 귀하 가족의 모국어로 초기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일상적으로 스페인어를 말하거나 선호한다면, 지역센터는 초기 검진에서 스페인어로 귀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지역센터는 발달 서비스부 (DDS,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가 귀하와 스페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지역센터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한해, 이러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642(b)조. DDS 가 스페인어로 초기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하면, 초기 검진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5. 초기 검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초기 검진은 지역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역 공동체의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관한 정보와 조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신 건강, 주거, 교육, 직업 훈련, 의료, 치과 의료,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유용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642(a)(2)조. 지역센터의 서비스, 그리고 기타 기관과 그들의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귀하의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6. 초기 검진에 지역센터가 사정을 해줄 것인지에 관한 결정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센터에서 초기 검진을 할 때, 지역센터가 사정을 해 줄 것인지에 관한 결정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센터는 귀하의 모국어로 결정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642(b)조.

7. 본인이(또는 자녀가) 사정을 받아야 한다면, 지역센터는 본인의 모국어로 이를 실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센터가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DDS 에서 모국어 사정 절차가 지역센터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귀하의 모국어로 이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귀하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센터 직원을 활용하거나, 통역관을 활용하고, 모국어로 된 서면 자료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643(d)조.

8. 지역센터는 얼마나 빨리 사정을 실시해야 합니까?

지역센터는 초기 검진 후 120 일 이내에 사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 지체하는 것이 귀하나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안전에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귀하나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심하게 저해하거나, 귀하나 자녀를 보다 제한적인 환경에 처하게 하는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다 빨리 - 초기 검진

후 60 일 이내 – 이를 실시해야 합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643(a)조.

9. 일반적으로 사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됩니까?

지역센터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정인 경우, 의료 기록 데이터 수집 및 검토, 적절한 검사와 평가, 귀하나 자녀의 장애 수준과 서비스 필요, 결정, 평가와 검사에 대한 속고 사항이 포함됩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643(a) 및 (b)조.

10. IPP 개발과 IPP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센터는 그러한 일들을 본인의 모국어로 이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센터는 귀하 (또는 필요한 경우 귀하의 가족)의 모국어로 IPP 를 계획 및 개발해야 하며, IPP 회의를 할 때에도 귀하 (또는 필요한 경우 귀하의 가족)의 모국어로 의사소통 해야 합니다. 지역센터는 DDS 가 그러한 노력이 지역센터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노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일상적으로 베트남어를 사용한다면, 지역센터는 귀하와 베트남어로 의사소통 해야 하며, 귀하의 IPP 도 베트남어로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은 물론, IPP 회의도 베트남어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지역센터는 귀하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센터의 직원을 활용하거나, 통역관을 활용하고, 귀하의 모국어로 된 서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646 (h)(1)조.

11. 본인의 IPP 사본을 모국어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센터는 귀하의 IPP 사본을 귀하의 모국어로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귀하 가족, 법적 보호자, 관리인, 승인된 대리인의 모국어,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제공해야 합니다. 단, DDS 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646(h)(2)조.

12.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의 IPP 를 모국어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귀하가 IPP 의 번역을 요청했으며, 귀하의 모국어가 “기준 언어”로 간주되는 경우, 지역센터는 귀하의 요청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모국어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숫자 또는 비율 이상의 사람들이 해당 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기준 언어”로 간주합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646.5 (a)(5)조.

13. 본인의 언어가 “기준 언어”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귀하의 언어가 “기준 언어”가 아닌 경우, 지역센터가 IPP 의 번역본을 제공하기까지 45 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센터는 IPP 번역본을 제공하기까지 60 일 이상 걸린 횟수가 얼마인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지역센터는 서비스 구매 데이터에 이 데이터를 포함시켜야 하며 (Purchase of Services Data report), 그 보고서를 지역센터의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또한 DDS 에도 보고되며, DDS 의 웹사이트에도 게재됩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519.5 (a)조.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귀하는 제 4731 조 불만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4731 조 불만 신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PublicationsRULAEnglish.htm>

14. 본인의 모국어가 “기준 언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페인어는 캘리포니아의 대다수 카운티에서 기준 언어입니다. 일부 카운티는 다른 카운티보다 더 많은 기준 언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기준 언어는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영어, 페르시아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입니다. 귀하의 모국어가 거주 카운티에서 기준 언어로 간주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시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hcs.ca.gov/formsandpubs/Documents/MMCDAPLsandPolicyLetters/APL2014/APL14-008.pdf>

15. 지역센터는 IPP 에 본인의 모국어가 무엇인지 문서화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센터는 IPP 에 귀하의 모국어를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선호한다면, 지역센터는 귀하의 IPP 에 모국어를 한국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646(h)(3)조.

16. 지역센터가 본인의 모국어를 문서화하지 않거나, 초기 검진, 사정, 평가, IPP 절차를 본인의 모국어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센터가 귀하의 모국어를 문서화하지 않거나, 초기 검진, 사정, 평가, IPP 절차를 귀하의 모국어로 이행하지 않으면, 귀하는 불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렌터만 법 4731 조에 의거하여,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거부되었다고 판단되면, 귀하는 지역센터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731 조. 불만을 제기하려면, 지역센터장 앞으로 간단한 서신을 보내면 됩니다.

지역센터장 명단과 연락처를 보시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dds.ca.gov/RC/RCList.cfm>.

귀하의 서신에는 귀하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귀하가 취한 조치, 관련인 성명,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불만 신고는 모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

불만 신고를 접수한 후, 지역센터장은 20 업무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고, 귀하에게 서면으로 해결 제안서를 보내야 합니다. 귀하가 해결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귀하는 15 업무일 이내에 DDS 에 불만 신고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DDS 는 45 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고, 귀하에게 답변을 보내야 합니다. Welf. and Inst. Code 제 4731(c)조.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다음의 링크에 나와 있는 본 기관 출간 자료 “렌터만 법에 의거한 권리 (Rights Under the Lanterman Act)” 제 12 장, 질문 41-44 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pubs/506301Ch12.pdf>

Disability Rights California 는 다양한 재정지원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지원단체의 전체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